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507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대철, 박근부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19. 10. 7. 접수 제34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8. 2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진도군 D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2018. 10.초경 추가공사비 및 암반파쇄 작업을 위한 장비사용료가 발생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2. 27.경 추가공사비를 정산하였고, 2019. 3. 소외 회사는 미지급공사대금이 15,294,095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이에 원고는 2019. 3. 19.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1525호 추가공사대금 및 장비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변론 및 조정을 거쳐 2019. 12.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991,525원(미지급공사대금 15,294,095원 + 장비사용료 19,597,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이후 소외 회사는 2020. 1. 6.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11.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4. 2.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접수 제3418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1. 소외 회사 대표이사 E를 채무자로 하여 F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6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9. 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1. 2. 25.에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기초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2018. 8. 28.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미지급공사대금 및 장비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9. 3.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2019. 12. 제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 유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9. 2.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광주광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19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 1,000만 원 상당으로 원고의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424,634원을 변제하기 부족하고, 2020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 -13,257,077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광주광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2019년 및 2020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며 이익잉여금 2억 원 이상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이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공유하다가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분양자로서 2017. 1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G 지상에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500kw의 H태양광발전소 분양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13.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게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8. 4. 2. 소외 회사가 발전소 부지로 매입해 놓은 전남 신안군 G 17950㎡ 중 17950분의 6103 지분과 2018. 4. 5. I 임야 3868㎡ 중 3868분의 128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소외 회사와 공유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2019. 9.경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비 마련을 위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 받은 다음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담보제공절차에 협력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미

별지

부동산목록

1. 전남 신안군 임야 17950㎡ 중 지분
17950분의 11847

2. 전남 신안군 임야 3868㎡ 중 지분 3868분
의 2570

-끝-

